

〈公開세미나 發表要旨〉

沿近海漁業의 勞使問題

劉 興 吉^{*)}

- | | |
|--------------------|-------------------|
| 1. 序 言 | 處遇의 施行이 緊要 |
| 2. 對策과 方法 | 2) 漁船員 賃金의 制度的 改善 |
| (1) 船員勤勞의 特殊性에 相應한 | (3. 沿近海 船員低賃金의 實態 |

1. 序 言

1年間의 우리나라 총어획고(생산고)는 무려 242萬 1千237%에 달하고 그 중 輸出量이 51萬 4千434%으로 魚價로 換算하여 約7億弗(美貨) 相當額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량은 1950년의 21萬9,450% (총어획량)에 比하면 約 12倍가 되고 1967년도 총어획고 75萬349%에 比해서 約 3倍 以上の 增産을 가져왔다.

이와 같이 우리 韓國 水産業은 國民 營養에 決定的 寄與로 단백질의 主供給源 役割을 擔當하며 또한 韓國經濟開發의 重要한 一翼을 擔當하여 中樞的인 位置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政府에서도 일찌기 이 水産業 振興의 重要性을 깊이 認識하고 施策的으로 積極인 育成에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國際 水産國들이 各己 自國領海의 魚族保護策으로써 200海里 領海 宣布 等の 措置에 따른 公海漁場의 制限에도 不拘하고 韓國의 漁業은 國際的으로 손꼽히는 눈부신 發展을 이룩하고 있다 하겠다. 한편으로 우리 水産業發展과 併行하여 國內의 一般의 他産業도 刮目한 高度成長을 거듭해 온 結果 이에 從事하는 汎勤勞者의 生活水準은 國家經濟의 成長에 比例할 生活水準의 向上이 不文律로서 持續해 온 것만은 또한 否定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韓國經濟의 도약 發展은 全体 産業人口의 需要量 激增의 趨勢로 물고가는 새로운 樣相을 露문시키게 됨으로써 오늘날 賃金 勤勞者의 고용 관계는 이른바 一大轉換點에 이르게 되었음을 否定할 수가 없다. 즉 우리 水産界의 지난 10年 以前의 고용관계를 보면 漁船員 勤勞者는 일터를 求하기 힘들는 時代로서 그들이 漁船員勤勞의 特殊性에 相應하는 正常한 근로조건은 커녕 貧困에서 延命策으로써의 就業이었다 하겠고, 여기 漁業을 經營하는 使用者 亦是 영세성을 免치 못하는 狀態에서 勞使가 다같이 苦戰을 면치 못하고 있었던 것만은 事實이었다. 그러나 지난 10年 以來 노사 관계는 外部로 부터의 영향과 直接的으로도 많은 變化를 가져왔다. 漁船員 근로자는 海上에서의 낱다른 苦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勤勞條件에 懷疑를 품게 되었고 陸上에서 安逸하게 所定의 安全한 法定 一定時間의 勤勞로서도 海上에서 時間의 制限없이 苦된 근로의

^{*)} 全國海員勞動組合 水産部長

代價보다 그 근로條件이 事實上 優位를 차지하는 逆現象이 빠른 懷疑를 갖게 된 根本原因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즉 理由 있는 懷疑이며 이로 因하여 現在 많은 熟練의 漁船員들의 이직률이 높아가고 있어 심지어는 一部 沿海漁業의 劣惡한 處遇에 있는 業種에 있어서는 船員이 없어 操業을 못하는 경우까지 發生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實로 急迫한 實情下에서 이를 이대로 자연추세에 맡겨 放置 傍觀해도 무방 할 것인가 하는 問題에 昻착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 모두 수산에서 生을 營爲하는 水産人으로서 우리들의 使命이며 또한 책임이 이 나라 水産의 持續的 發展을 이룩하여 나라와 民族 그리고 自身들의 來日의 繁榮을 圖謀하는데 있음은 贅言을 要치 않을 것인즉 이의 事態를 이대로 傍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轉換點에 서있는 事態를 勞使間 協助로서 能動的으로 克復해야 함은 當面 緊要不可缺한 課題로 認識되기 때문이다.

2. 對策과 方法

前述한 바와 같이 現下 沿近海漁業 및 遠洋漁業을 막론하고 漁業에 從事하는 船員 근로자의 이직률이 激增하고 있음은 否認할 수가 없는 實態에 있고 이러한 傾向은 今後 더욱 擴散될 우려마저 없지 아니하며, 우리가 장래의 展望으로 봐서 漁業勞動의 再生産 等の 課題가 이 나라 漁業振興에 人力需要件으로 登場될 날은 결코 먼 장래가 아니며 지금 이 時間에도 深刻한 狀態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의 선결책이 時急히 강구 되어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對策이 어떠한 것인가를 略述하면 다음과 같은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1) 船員勤勞의 特殊性에 相應한 處遇의 施行이 緊要

船員勤勞의 特殊性이라 함은 船員은 船舶의 運航 및 漁撈操業에 從事하는 勤勞者로서 그들의 就業環境은 一般的 陸上の 汎勤勞者의 勤勞環境과는 判異한 特殊性을 지니고 있다. 즉 그들은 船舶이 職場이요, 事業場이면서 또한 船舶에서 起居寢食함으로서, 家庭과 隔離生活를 勘耐하지 아니할 수 없는 孤獨한 環境속에서 一般 勤勞者에 比해서 文化的인 施惠도 지극히 制限을 받으며 情緒生活 禁慾生活 危險率도 他業種이 다르지 못하는 가장 높은 比率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勞動量에 있어서도 最大의 강도를 保有한다. 또한 家庭과 隔離生活에서 오는 家庭에 대한 不安要素로서 生計維持費 未給의 不安 世帶主의 不在로 因한 子女의 問題兒 發生 및 家庭破綻의 危險性 增大 이러한 特殊性은 선원근로자가 一般的 근로자 보다는 그 特殊性에 相應하는 處遇(즉, 근로조건)를 해야만 正常이다. 이 特殊性에 相應의 處遇는 적어도 一般的 汎근로자에 대한 處遇의 倍增 또는 最少限 1.5倍 以上으로 근로조건을 설정함이 常例이며 이것은 先進國 일수록 선원 대우는 더욱 優待되고 있다.

(2) 漁船員 賃金의 制度的 改善

沿近海漁業의 勞使問題

現在 漁船員의 賃金制度는 大部分이 比率에 依한 報酬制下에 있고 一部 極少類가 月給制下에서 약간의 生産手當을 別途로 受領하는 制度下에 있고 이들에게는 近年에 와서 船員法의 規定한 바에 따라 比率報酬制下의 船員에게는 月 一定額을 策定 支給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制度는 月給制下의 賃金勤勞者에 比하여 制度의 各已 長短點은 있겠으나 大體로 이 比率制 報酬는 未久에 止揚되어 적어도 선원이 받는 報酬가 月間 그들의 生計를 最少限 充足 시킬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月 定期支給이 履行될 수 있는 月給制로 계도적 改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현재 漁船員이 月間 受領하는 一定額은 이런 바 比率報酬의 清算(沿近海漁業에는 3個月 遠洋漁業에서 1年을 要함) 등의 家族生計費를 고려해서 支給하는 中途金(賃金)인데도 이 一定額의 支給額은 船員의 總賃金(月間計定)의 半額도 못되는 小額을 策定 支給하는 弊端이 어차피 止揚되어야 할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3. 沿近海 船員低賃金の 實態

우리나라 漁業의 勞動再生産 課題는 현재 매우 시급하다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漁業도 나날이 發展해가는 國際漁撈技術의 革新傾向에 適應해서 적어도 熟達한 技量과 漁撈操業勞動에 단련된 良質의 勞動力을 再生産하여 確保해가는 課題는 直接 漁業의 採算性을 確立하는 基本이 되고 또한 國際漁業競爭力을 길러 長足的 漁業振興策을 圖謀하는 구체책이 된다.

현재 沿近海漁業의 業種을 分類해 볼때 大體로 大型機船低引網(遠洋) 中小型機船底引網(西南區) 및 各地域에 散在한 小型底引網, 旋網, 상이延繩, 鮫鰓網, 捕鯨, 權現網 其他 業種에 從事하는 漁船員 勤勞者의 賃金은 實際 그들의 月 總賃金이(추정액) 현재 月間 最下位 職級船員이 月間 最下 5萬원에서 最高 約 15萬원 程度라고 하면 平均値로 最下位職級船員이 月10萬원 以下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船員의 平均年齡은 大部分이 軍服務를 畢한 25歲 以上 30歲 未滿의 青年層으로서 적어도 그 扶養家族이 平均値로 2명 以上 3名 未滿으로 보며 그들의 月間所要되는 實生計費만 하더라도 15萬원 程度가 所要된다. 그런데 現在의 船員賃金은 陸上의 汎勤勞者의 賃金에 比해서 劣惡하고 결코 上廻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에 있으므로 같은 賃金인 경우에도 船員으로써 就業하기 보다는 차라리 陸上에서 안전하고 家族과 同居의 正常한 情緒生活를 누리하고자 함이 人之常情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現狀態가 持續하는 限 船員의 離職率 防止는 매우 어려움을 그 누구도 直感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이 兪선원에 대한 劃期的 處遇改善은 當面 緊要한 課題라 할 것이다.

한편으로 業界에서는 漁船員의 賃金 其他 條件의 改善이 漁族의 점차적 고갈 現狀에다 各 나라가 魚族保護를 위한 200해리 經濟水域宣布等으로 漁業收支가 넉넉지 못한 터전에서 船員의 處遇改善만 하다가는 倒産의 危機마저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主張도 없지 않다. 그러

나 그 대신 魚價 等の 價格維持에서 수지면에 相當效果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이 合理的으로 打開해야 할 새로운 課題가 속출함으로써 一大 轉換點에 이르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當面 勞使가 다같이 진동을 겪고 있는 事案을 對話를 통해서 平和的으로 解決하는 지혜를 必要로 하며 過去 어느때 보다도 切實하게 여겨지는 勞使의 책임 課題로서 이 나라 水産의 長足的 發展과 모든 水産人의 보다 繁榮된 來日을 위하여 健全한 協助가 있어야 할 것이다.